

국회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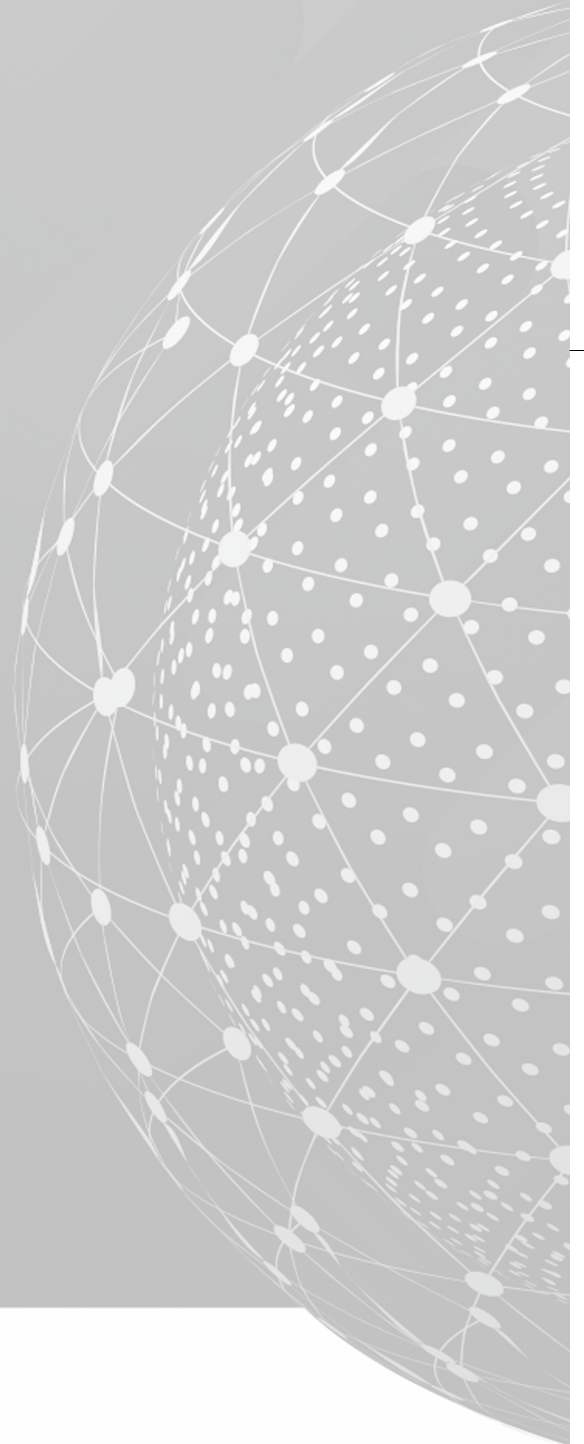
2023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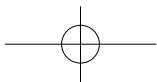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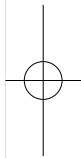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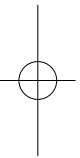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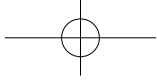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교육공동체 실현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법 개정방안

2023 | 10:00~12:00 | 국회의원회관
5.12.(금) | AM AM | 제2세미나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교육공동체 실현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 주제 :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교육공동체 실현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법 개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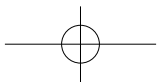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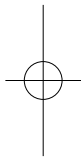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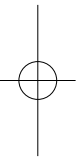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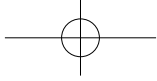
■ 일시 : 2023년 5월 12일(금) 10:00~12: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서동용, 강민정, 민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 토론회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10(10')	내빈 소개 및 축사, 인사말	서동용 의원, 전희영 전교조위원장, 민형배 의원
10:10~10:15(5')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와 진행 안내	좌장 : 전승혁 전교조 청년부위원장
10:15~10:55(40')	【발제1】 김혜영 전주새뜰유치원 유아특수 교사	
	학교 내 아동학대 문제의 현장 사례 -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	
	【발제2】 강영구 전교조 정책법률국장 변호사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법 개정 방향	
10:55~11:55(60')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법 개정방안 토론	1.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2. 최보영 :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3. 장경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1팀 4. 이윤경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5. 이은선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1:55~12:00(5')	폐회	



2023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환영사	국회의원 서동용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토론회	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희영 아동학대 사안처리 법안 개정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8
인사말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강민정	10 11
축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12
발제	1. 전주새뜰유치원 유아특수 교사 김혜영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	16
	2. 전교조 정책법률국장 변호사 강영구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법 개정 방향」	19
토론	1. 김민석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34
	2.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43
	3. 장경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1팀 단계별 대응 정책이 모두 마련되어야 한다	44
	4.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은 최대한 촘촘해야 한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	51
	5.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교사들은 '아동학대'라는 말을 왜 기피할까?	56
참고자료	신수경 변호사 「아동학대 관련 법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 오늘의 교육 72호, 2023. 2.	60

<환영사>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토론회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서동용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마련해주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민형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남용으로 인한 정상적 교육 활동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교사와 학생의 격리가 즉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로 인정될 경우,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학대 판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에서는 지자체에 있는 사례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학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일부 전담 공무원과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에 많은 교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수사기관마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기존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아동학대 사안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6.7%의 교사가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소명기회, 진상조사 없이 학부모와 학생의 신고(민원)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라고 답한 비율도 91.6%에 달했습니다.

교사의 고유 재량권으로 보장해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아동학대 피해 주장과 신고조치 사례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업무에서의 배제, 동료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업무 배제 교사 낙인찍기까지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사례들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학교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물론 학교 내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길에 저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제도를 개선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영사>

아동학대 사안처리 법안 개정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학부모로부터 아이를 ‘눈빛으로 차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눈빛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바디캠이라도 달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다.

정서 학대로 신고 당할 거 같아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소극적이게 되었는데 이 또한 방임이라 신고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언론 보도와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운이 좋아 지금까지 신고당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전교조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사안처리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온 실태이자 선생님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수학여행 가지 않겠다는 학생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했다가 교육활동을 강요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의 소식을 바로 며칠전 강원지역 학교방문에서 접합니다. 가슴이 무너져내립니다.

요즘 학교에서 교사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불안요소 중 하나를 “아동학대 신고”로 뽑습니다. 이것은 성별, 나이, 교직경력 고하를 막론하고 교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동학대 문제로 신고당할 두려움에 퇴직을 결심하는 교사들을 요즘 주위에서 흔하게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업, 생활지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교육과정, 교사의 말투와 손짓 하나하나까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이런 현실속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교사들이 적극적 교육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지 모른다는 교사들의 불안감은 교육활동을 소극적이게 만들고,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전교조는 아동복지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합니다.

‘우리들을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을 지키겠다’는 것은 전교조 창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학교현장은 아동복지법의 그 취지와는 다른 적용으로 오히려 아동의 인권은 물론이며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동학대 의심시 신고의무 조항, 전수조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은 모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정하고 마련된 규정입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가정이 아닌 학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상 가정 내 아동학대와 가정 외 아동학대를 구분하여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현재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원가정의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에 별도의 기구를 1차적으로 거치게 하거나 아예 별도의 처리과정을 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우리 모두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서 아동학대 사안처리 관련 법안 개정은 그 어떤 법안보다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법안개정을 위한 첫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토론에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말>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하는 민형배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동용 의원님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사 준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교사에 대한 존중이 추락합니다. 특히 최근 MBC PD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편에 적잖이 놀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동학대에는 무고죄가 없어서 그런지 법을 악용한 사례가 많습니다. 끔찍한 경험에 교사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심지어 부산의 한 신입 교사는 피로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교사의 방어권이 보이질 않습니다. 단순 민원을 넘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도 교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사가 짊어져야 할 과도한 위험부담이 교육에 대한 열정마저 앗아가기 십상입니다. 학생과 교사, 학교를 넘어 사회 전체의 손실입니다.

수치가 증명합니다. 교사가 교육현장을 떠납니다. 스스로 사의를 표한 의원면직자 중 교육공무원의 비율은 2017년 이후 50%가 넘어갑니다. 공무원 전체 퇴직자 중 교육공무원의 의원면직 비율도 60%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교육계에선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지하게 되짚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 의심이 아닌 신뢰가 가득한 교실로 회복할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리라 기대합니다.

사법은 어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입법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지켜낼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5월 12일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민형배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 현장에서 참교육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의견을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한 교육공동체'를 주제로 열립니다. 아이들은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사들의 교육활동도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만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신고, 전수조사, 교사분리조치가 이뤄져 학교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 뿐 아니라 교사들로부터 교육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와 행정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은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 사회가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현장 경험과 이론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막으면서 아이들은 보호하는 대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오늘 토론회의 결과가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현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2023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축 사>



「2023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국회 토론회 협의회장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오늘 「2023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서동용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통한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를 물건같이 알지 말고,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라는 100년 전 방정환 선생의 말씀도 있거니와, 당연히 어린이는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동 청소년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바탕 위에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동 성장의 중요한 조력자인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압박’이나 ‘강요’ 등 정서적 학대로 확대 해석하여 교사를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교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교사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교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려 하고 있으며, 피해교원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보호 침해 피해교원 지원을 확대하였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아동학대는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 중심으로 사안 처리가 진행되어 교육청 차원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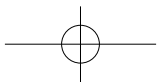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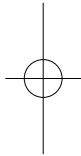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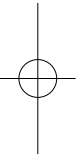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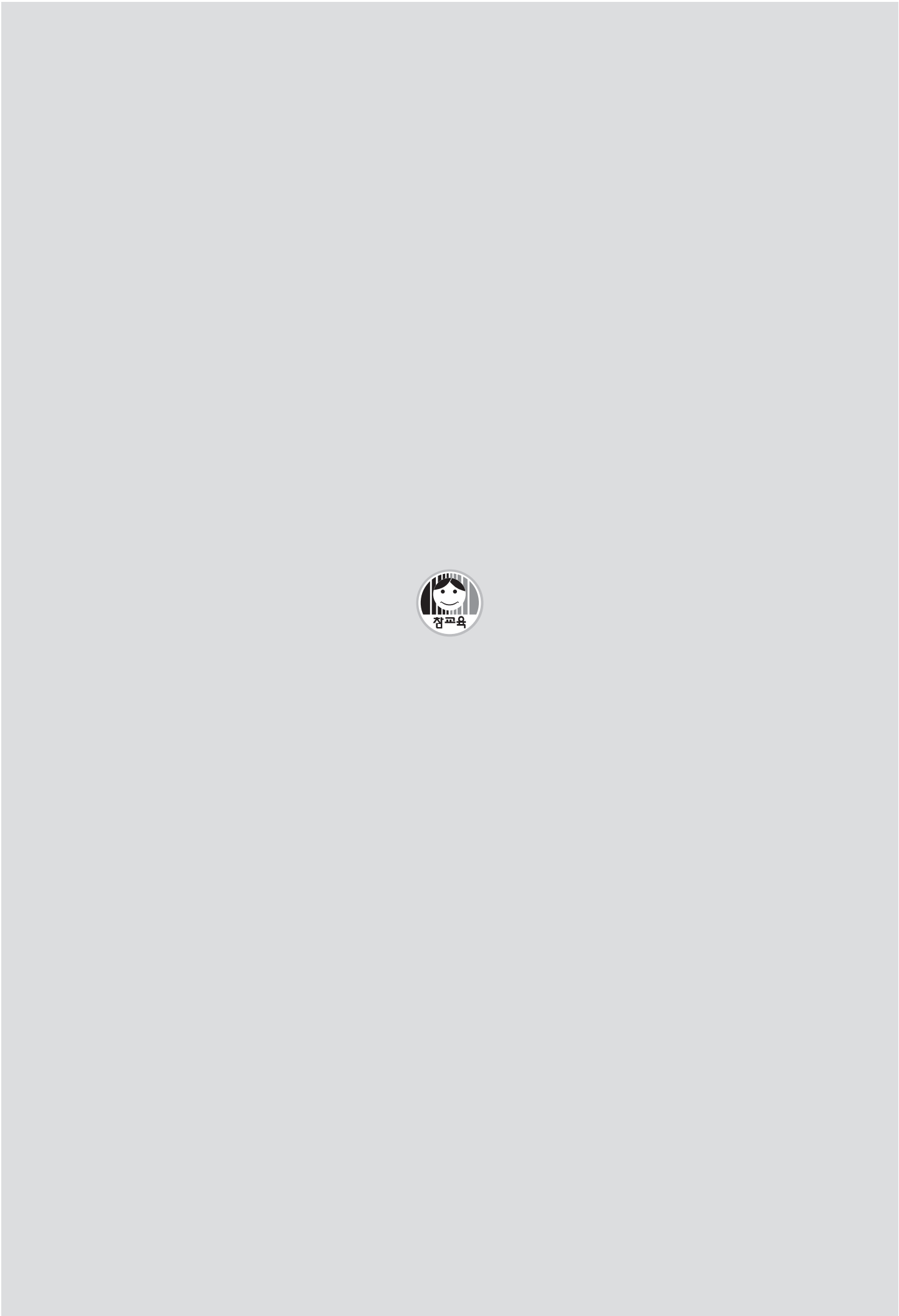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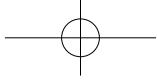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서동용 의원님과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좌장을 비롯한 토론 참가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1

발제

1. 전주새뜰유치원 유아특수 교사 김혜영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
2. 전교조 정책법률국장 변호사 강영구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과 법 개정 방향」

발제 1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

전주새뜰유치원 교사 김혜영

2023년 3월 7일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PD수첩>에서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만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 전수조사, 교사 분리 조치가 진행되는 현재의 아동학대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PD수첩>의 내용이 극단적인 사례만 보여준 것일까?

나는 2021-22년까지 2년동안 전교조 전북지부 노조전임으로 근무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주장 또는 신고만으로 담임 교체, 직위해제 등의 극단적인 처분이 결정나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휴직/의원 면직까지 고민하고 결정하는지를 보아왔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두 손 놓고 지켜볼 뿐이다.

A교사는 학부모가 유아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 녹음된 말투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유아의 생활 지도 과정에서 높은 억양으로 유아에게 말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교사를 신고한 것이다. 교사는 신고와 동시에 담임 교체가 되었고 유아와의 분리조치가 진행되었다. 학부모가 몰래 유아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낸 행위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의 1항을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지역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담임교체를 강행하고 유아와 교사의 분리조치를 위해 교사에게 연차/병가등을 쓸 것을 종용한 것이다. 해결하는 과정도 황당하다. 유치원 원장과 원감은 아동학대 신고 취하의 조건으로 교사에게 합의금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과정 자체가 무서웠던 A유치원 교사는 학부모가 요구하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취하되었지만 해당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겼고 병휴직에 들어갔다.

B교사는 놀이 중 유치원에서 다친 유아의 상처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야 했다. 실외놀이 중 유아 무릎을 다쳤고 교사는 보건실에서 응급조치도 했다. 그리고 학부모에게 전화해 유아 다친 상황과 부위/응급조치한 상황까지 알렸다. 그런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사유는 유아 다칠 상황을 예방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것이다. 신고로 인해 교사는 분리조치되었고 무혐의 처분이 났지만 휴직 후 기존의 유치원으로 돌아갈 수 없어 전보 신청을 했다.

C교사는 학습이 더딘 학생의 보충 학습 지도 중 학생의 머리를 연필로 살짝 때리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교사는 바로 학생에게 사과하고 학부모에게도 사과를 했다. 학부모와 원만히 이야기가 되었고 그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바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그리고 바로 담임교체가 이루어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전수조사를 받았고 여청과에 두 번이나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피해를 호소하는 사안이 위의 한가지 행동이 아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임을 인정하고 조사과정에도 성실히 임했다. 하지만 하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에 노출되었다고 한다니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분리조치가 되고 조사를 받으며 이미 C교사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어 버렸다.

위 사례들은 아동학대 주장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다. 요즘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이번엔 내 차례인가보다”라고 말한다. 그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동학대 신고라는 것이다. 학대를 일삼는 교사라서가 아니라 생활지도를 적절히 하지 못하는 교사라서가 아니다. 학교 일상에서 교사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동학대 신고인 것이다. 또한 교사가 수업 중 할 수 있는 생활지도 기준이 법, 조례, 교육부 고시 어디에도 없다보니 각종 시비에 휘말려 혼란이 발생해왔다. 이런 혼란이 아동학대 신고로까지 이어지게 되니 교사들은 당당하게 생활지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전교조 전북지부에서는 2022년 6월 ‘교육 활동 권한 보장 요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였고 7월 14일 교육활동 권한 보장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북교육활동보호 조례 개정 운동으로 조례안을 제출하고 도의원 만남 등을 진행하였다. ‘교육활동 보호 조례’의 개정안에 교원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생활지도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발의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절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절한 수준의 방과 후 교육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6. 보호자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교육청과 도의회는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적용 법이 그대로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으

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있는데 두 가지 모두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이 학교 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조항’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민원만 들어와도 교장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 시 신고의무조항에는 과태료 조항까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교장들은 신고 의무 연수를 따로 받는다. 즉각 분리조치와 전수조사도 모두 의무사항이기에 검찰기소까지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단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은 그야말로 ‘현실 속 지옥’을 겪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의무적인 전수조사 조항은 아동돌봄센터 등 집단 시설 내 아동학대를 염두하고 만든 조항이다. 이것 역시 학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학교 내 전수조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한다. 즉각적인 분리조치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동거하고 있는 친권자와 분리조치가 필수다. 그러나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는 분리조치가 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가정 내 아동학대와 학교내 아동학대를 구분해서 다른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을 되풀이 할 것인가! 이미 많은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하다가 시비에 휘말리고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하여 육체적,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았고 그 힘듦을 호소하고 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학부모 민원이 곧바로 형사 사건화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 ▶ 학교 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명시
-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시 학교장의 책무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명시
- ▶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 ▶ 교원의 생활지도가 학칙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국회 토론회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함께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출처: 전교조 전북지부 / 학생, 교사를 지키는 ‘교육활동 권한 보장’ 요구 서명 운동, https://chamjb.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b_1&wr_id=14566&page=4&menu_id=2010

출처: 전교조 / 교육희망 / 전교조, ‘아동학대처벌법’등 법개정 활동 본격 시동, <https://news.eduhope.net/25046>

발제2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제도의 문제점과 법 개정방향

강영구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1. 현행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제도의 문제점

1. 2022. 10. 전교조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 2022.9.21.~10.4 교사 6,243명, 신뢰도 95%, 오차범위 ±1.23%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 결과 요약〉

- 실태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6명(61.7%)이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직접 받았다고 응답한 교사의 학교급별 비율을 살펴보면 특수학교가 4명 중 1명꼴인 28.8%로 가장 많았다. 유치원 역시 21.2%로 근소한 차이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응답자의 98.2%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후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답하였다.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역시 84.6%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라고 답했다. 관리자들도 ‘교권 침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안을 기계적으로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응답 교사의 절반에 달하는 46.3%가 직접 겪거나 들은 아동학대 신고(민원)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유죄가 확정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의 답변을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은 61.4%로 더 높았고,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로 더 낮았다.
- 교사 10명 중 9명(92.9%)는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 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민원) 대상이 되거나 이를 목격한 적이 있다는 61.7%보다 31.2%나 더 높은 수치다.

◎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

- 가해자로 누구나 오해 받을 수 있고, 소명 기회도 없는 시스템
- 주변에 무고로 신고 당하는 사례가 많아서
- 자폐 학생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와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하였고, 아이의 어깨를 밀쳐 거리를 두려 하였으나 '왜 때려요?'라고 외치는 아이를 보며 아동학대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음. 바디캠이라도 달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다
- 29명의 아이들이 모인 교실에서 다툼을 해결하다 보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강압적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기분이 나빠서', '화김에' 신고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에 언젠가는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열심히 하지 말자는 자조 섞인 농담이 도는 이유이기도 하다.
- 아동학대와 지도의 차이가 불분명 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교사의 지도 활동 전반이 모두 아동학대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교사가 정당한 지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 정서 학대로 신고 당할 거 같아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소극적이게 되었는데 이 또한 방임이라 신고 당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
- 옆 반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조사받는 과정을 보며 모든 훈육행위는 아동학대라는 생각을 하게 됨. 아동학대 판단 기준은 '교육적 행위' 여부가 아닌 '아동이 느낀 감정'이 절대적이었음.
-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임. 교사가 기계가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
- 학부모로부터 아이를 '눈빛으로 차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눈빛 관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가
- 교사의 손짓, 말투 하나하나 매뉴얼에 따라 걸고 넘어지면 안 걸릴게 없다
- 발달 단계상 유아들은 상상, 소망, 현실을 구분하여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움. 유아의 말에 전적으로 기대어 신고하면 교사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
- 아동학대의 기본은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불신이 아닐까 똑같은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모두 다르다
-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며 위기감을 느낌
- 우리 학교 선생님 2명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병가 중. 소문이 퍼지며 학부모들 사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교사는 꿈 짝 못 한다는 말이 돌고 있음
-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의 등을 두드리거나 흔들며 깨우며 문득 신고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악의적인 신고는 나의 행동과 무관하기 때문
- 학부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하자 학부모가 역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음
- 아동학대는 신고하면 '유죄추정' 원칙으로 조사 진행
- 아이들이 먼저 '아동학대 신고' 운운하는 이야기를 할 때
- 10초 이상 학생을 응시했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를 보고
- 학생, 학부모의 '기분나빠'가 교사의 '아동학대'로 둔갑할 때
- 아동학대는 '의심된다, 신고한다, 교사 무혐의, 아! 아니구나'의 패턴을 갖는다. 신고자에게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고, 의심받은 교사는 저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다. 물론 억울한 교사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없다
-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실에서 야단치면 수치심 유발, 교실 밖에서 야단치면 끌고가서 협박이라 아동학대이다
- 교사의 같은 행동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의 반응은 천차만별

- 교사가 지도를 해도 한 번에 행동을 수정하지 않는 아이가 있다. 싫어하는 그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지도를 하면서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위험한 행동을 제지해도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게 현실
- 학생 지도 과정에서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 언론 보도와 주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운이 좋아 지금까지 신고당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도 과정에서 과한 감정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상대에게 학대로 느껴질 수 있음
-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 소명의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아동학대의 경우 무고죄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아님 말고 식의 신고가 너무 많다
- 관리자는 학부모의 편에 선 상황에서 교사가 '잘못 없음'을 입증해야한다
- 학부모의 악의적 민원에 대해 학교 관리자나 교육청이 적극 교사를 보호한 사례를 본 적이 없다
- 꼬투리 잡으면 안 잡힐 수 없다
- 학교장의 무성의한 대처
- 학생 교육과정에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의 핑계가 될 수 있음

-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었다. 응답자의 96.7%가 '오해로 인한 신고가 있다.'라고 답했다. '교육부의 아동학대예방 가이드북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95.2%, '소명기회, 진상조사 없이 학부모·학생의 신고(민원)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라는 응답은 91.6%, '아동학대 신고(민원)가 접수되면 '필요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신고만으로 교육청 전수조사 진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였다. '아동학대 사안을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 '소명기회, 진상조사 없이 관리자가 신고한 학부모·학생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한다.', '사실 확인, 사안의 경중과 관계 없이 신고(민원)만으로 교육청·관리자가 담임교체, 출근 정지 등의 분리조치를 한다.'라는 응답도 각각 88.8%, 88.6%, 85.6%에 달했다. 아동학대 신고(민원) 이후 사안 처리 과정에서 매뉴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교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 요구가 높아지는 이유다.
-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교권 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교사의 76.3%는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학교자치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꼽았다. '사실 확인,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를 택한 교사도 74.6%에 달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는 58.3%, '교육청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전문성 확충'이 41.7%, '사안 발생 시 관리자의 적극적 판단과 개입(지도) 필요'가 21.7%로 뒤를 이었다.

- 교사들은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이 '교육적 행위' 여부가 아닌 '아동이나 학부모가 느낀 감정' 등으로 모호하기에 나의 행동과 무관하게 '악의적인 신고'로 아동학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
-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교사들이 적극적 교육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2. 2023. 3. PD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방송

- 2022년 3월 7일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PD수첩>에서는 현재의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줌.

<PD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방송 내용 요약>

○ 방송에서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4명의 교사 사례가 나옴

○ 사례 1

- 교사가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빨간색 카드를 들고 있는 호랑이 캐릭터 옆에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붙였고, 이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인정된 사건
- 아동이 물통을 구기며 수업을 방해하자, 담임교사는 "OO친구 레드카드네" 하며 호랑이 캐릭터 옆에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표를 붙임. / 학부모는 이 일을 계기로 담임교체를 요구하였고,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함. /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함. 근거는 자치단체에 속한 아동학대전문기관에서 해당 사안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였다는 것. 검찰 역시 이를 근거로 기소유예처분을 함.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를 인정한 것이므로, 교육청은 견책처분을 함.
- **신수경 변호사 인터뷰**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내 아동학대 전문가예요. 그들은 별로 그렇게 이걸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아야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원가정에 개입을 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를 해주고 교육상담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게 아동복지법의 목표니까. 근데 그게 가정 내 아동학대가 학교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을 해버리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엉뚱한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 사례 2

- 원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나, 학부모가 불리해지자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
-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학생의 학부모가 수업 중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한게 누구야"라고 고함을 치고, 교사에게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나 이거 가만 안 뉘. 경찰에도 교육청에도 신고할거야"라며 폭언을 퍼붓다가 교사의 목살을 잡고 끌어내는 과정에서 교사가 문에 부딪혀 상해를 입음. / 상황이 불리해진 학부모는 교사에게 사과하는 대신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함. 신고이유는 가해학생이 같은 반 학생 한 명을 때려서 교사가 가해학생을 지도한 것이 '학생을 폭력적인 아이로 낙인찍어 정서학대'라는 것. / 고소 당한 교사는 4개월 동안 경찰서로, 구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했고, 변호사를 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모두 교사 혼자 감당해야 했음. 결국 어렵게 아동학대에 대해 무혐의

가 인정되었지만 학부모와의 소송전으로 해당교사는 2년째 휴직중. 그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마음의 병을 얻음.

- 피해를 받는 중에도 아무 곳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는 교사.
- **피해교사의 인터뷰** : “나는 그냥 여기 소속된 교사고 아이들을 가르친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인가? 여기 소속된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나?”

○ 사례 3

- 학교장이 아동학대 의심시 신고의무를 이유로 학부모의 민원만으로 소속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매뉴얼에 따라 해당 교사를 분리 조치하자,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 있던 교사가 일주일 후 자살에 이른 사건
- 학생 여러 명이 스테이플러가 없다고 손을 들자, 교사가 그 중 한 명에게 먼저 빌려주었는데 먼저 받지 못한 학생 중 한 명이 “씨X”이라며 욕설을 함. 교사가 욕한 학생에게 복도로 나가 있으라고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함. / 그러자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었다며 정서학대라고 민원을 제기함. / 학교장은 아동학대 의심시 신고의무를 이유로 학부모의 민원만으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매뉴얼에 따라 해당 교사를 분리 조치함. 분리 조치에 의하여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 있던 교사는 일주일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음.
- **교장의 인터뷰** : “아동학대는 그것을 인지한 즉시 신고 의무가 있어서 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중재라도 나와서 사안 조사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할 것 같다”

○ 사례 4

- 교사의 지도행위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곧바로 형사사건화 되고, 더이상 중재의 여지가 없어진 채 진행되고 있는 사건
- 반 학생들이 뛰어들어 학생이 주먹으로 친구를 때린다고 말함. 담임이 교실로 갔을 때 해당 학생이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다른 학생을 때리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까지 진정하지 못하자 교실이 난장판이 되어버림. 아이들끼리 큰 다툼이 있거나 반이 혼란스러울 때 직접 떼어놓을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수도 없고 그 아이를 혼낼수도 꾸짖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건 ‘뭔가 다른 큰 소리를 내서 아이들을 빨리 진정시켜야겠다’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책상을 넘어뜨려 큰 소리를 냄. / 그런데 학부모는 그 상황에 대해 ‘선생님이 책상을 아이에게 던졌다 또는 찼다’라고 말을 함. 학부모는 아동학대 고소와 함께 교장 및 교사에게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학부모가 교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너무 과했나보다하고 적당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나, 교사 입장에서는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것은 곧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어 학부모에게 어떤 말도 하기가 어렵게 됨. 학부모의 민원이 어떠한 중재 절차도 없이 곧바로 사법적 논리로 넘어가고 이에 대한 대응은 온전히 교사의 몫으로 남음.
- **신수경 변호사의 인터뷰** : “이걸 형사 사건화를 안 시키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처럼 이 학교 안의 아동학대 같은 경우도 신고가 되게 된다면 한번은 학교 안에서 아니면 교육청 단위에서 모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간에 중재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경찰이 아닌 다른 외부자원들한테 와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면서 중재하는 절차만이라도 하나 넣어주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요.”

- **교육부 입장** : “정당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생활지도에 관해서는 아동학대로 판정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판정기준들에 교육활동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와 같이 협의할 생각을 갖고 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호가 돼야만 거기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진행자**: “전국의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동학대라는 것을 무기로 교사들을 고소하고 공격했을 경우에 교사들은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그걸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아동학대가 된다면 교사는 무엇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있을까? 지금이라도 학부모의 민원이 형사사건이 되지 않도록 학교나 교육청 내에 중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말 교사의 생활지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교육부에서 현재 시행령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 시행령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문제점

1.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¹⁾은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

- 신수경 변호사, “아동학대 관련 법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 오늘의 교육 72호, 2023. 2.

〈아동학대 관련 법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요약)〉

-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률은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임.

-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가정 외,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발생
 -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으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와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됨. ‘보호자’의 개념인 ‘아동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 ‘업무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의 범위에 ‘교사’가 포함된다고 해석됨에 따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됨.
 - 그러나, ‘가정 내’ 아동학대 특성으로 인하여 마련된 일련의 절차들이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현재 아동학대에 관한 일선의 업무 매뉴얼은 ‘가정 내’ 아동학대와 ‘가정 외, 학교 내’ 아동학대를 구분하고 있지 않음).
 - 즉, 아동학대 의심시 신고의무 조항, 전수조사,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은 모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정하고 마련된 규정임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아동학대처벌법)은 2014년 제정됨.

구분	발생하는 문제
‘의심시 신고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 학대 상황과 아동의 위험이 외부에서 목격되기 매우 어려운 은폐성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마련된 특별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 : 비교적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확인 등을 거쳐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이 개입하도록 하여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심시 신고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
지자체의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적인 피해아동 확인과 다른 아동들의 목격 진술 확보 필요 - 아동들에 대한 후견권을 가지고 아동을 양육하는 사실상 가정과 유사한 곳 - 조사주체인 시군구의 관리감독권이 미치므로,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산하 학교는 시군구의 관리감독권이 미치지 않음 - 사안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측의 비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 투여되는 행정력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아동들의 2차 피해 양상도 상당수 -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충분
‘분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 동거하는 아동과 친권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 ○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 : 학대행위 의심자인 교사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도록 하는 조치는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여 학교에 추가적인 민원 발생

○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절차 마련해야

- ‘가정 외,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 애초 정부가 의도한 강력한 대응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가정 내’ 아동학대와 결을 달리함. 실제로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법이 마련한 절차가 이용될 필요성이 적으며,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로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적음.
- 반면, 빈번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신고될 우려 등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매우 위축되어 있음.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 의심을 핑계 삼아 교사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
-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법상 가정 내 아동학대와 가정 외 아동학대를 구분하여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함. 가정 내 아동학대는 현재의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원가정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고, 가정 외 아동학대, 가령 학교에서의 경우, 교육청에 별도의 분쟁해결기구를 1차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외국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관련 법령은 주로 ‘가정 내’ 아동학대에 적용된다고 함.

2. 구체적 문제점

가. 아동학대 신고, 신고접수, 현장조사 관련

- 먼저, 아동학대 신고와 신고접수, 현장조사 관련,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교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63조). 그리고 이와 같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법 제11조), 현장에 출동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즉시 응급조치(제지, 격리 등)를 해야 함(법 제12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 25. 생략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

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②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신설 2021. 1. 26.>
- 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 ⑥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 ⑦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6.> [제목개정 2020. 3.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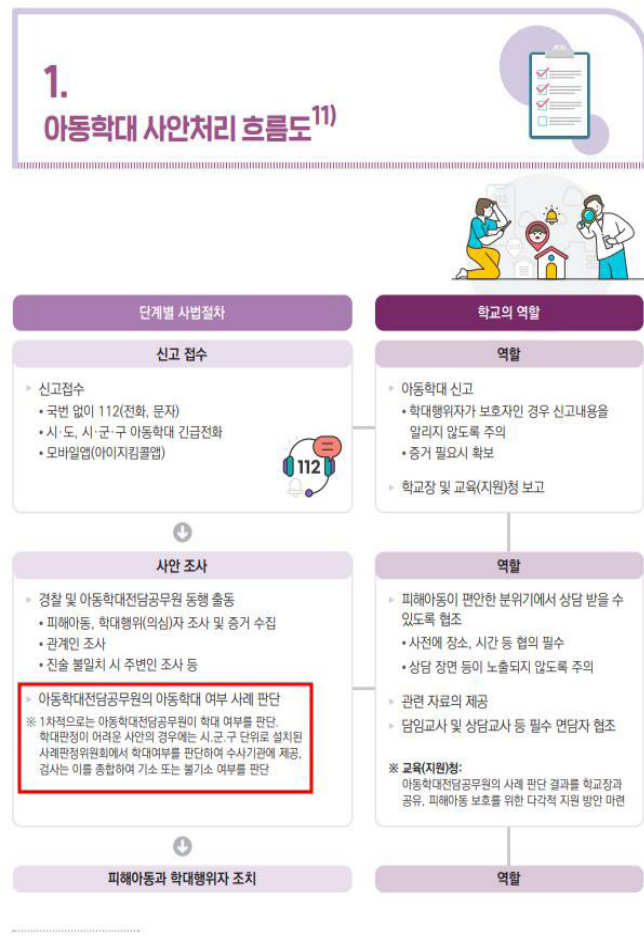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즉, 현행법 하에서 학부모가 “교사가 정서학대를 하였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경우 이는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인 학교장으로서는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음. 그리고 이러한 ‘신고’ 이후에는 → 수사기관등의 ‘현장출동’ → ‘응급조치(특히 격리조치)’ 등이 따라오게 됨. 결국, PD수첩에서 교장이 소속 교사를 신고한 사례는 교장 개인을 비난할 문제라기 보다는 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임.
- 이와 같이 부모의 아동학대 주장만 있으면 아동학대범죄 신고 → 전수조사 → 교사 분리조치가 진행되는 현재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스템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신고의무자인 교장 등이 학부모의 민원을 이유로 기계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민원이 곧바로 형사사건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 교사의 교육활동 관련 학부모와 교사 간 이견,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나. 아동학대 기소 여부 결정 관련

- 다음으로, 아동학대 기소 여부 결정 관련, 현재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2022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
- 즉, 신고접수와 사안조사 이후 아동학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 그리고 학대 판정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함. 수사기관은 사례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아동학대 기소 여부를 결정함.
- 그런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가정 내’ 아동학대 전문가이며, ‘학교 내’ 아동학대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별도의 전문 기구가 필요함.



11) 참고: 경기도교육청(202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III.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

1.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기구 설치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조항 신설

-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기구 설치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조항 신설
- 시·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기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학교 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또한, 동 기구에서 학부모의 민원이 곧바로 형사사건화 되지 않도록 교사의 교육활동 관련 학부모와 교사 간 이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2.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시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기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을 담당하도록 함

-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현장출동, 응급조치(격리조치) 등 관련 조항에서 관련 업무 처리자에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더하여 ‘시도교육청의 아동복지전담기구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추가함.
- 시도교육청의 아동학대전담기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 여부 판단을 담당하도록 함.

※ 관련 조문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⑤ 생략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 ⑤, ⑥, ⑦ 생략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6. 29.]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

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2

토론

1. 김민석 | 전교조 교권상담국장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2. 최보영 |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3. 장경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1팀
단계별 대응 정책이 모두 마련되어야 한다
4. 이윤경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은 최대한 촘촘해야 한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
5. 이은선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교사들은 '아동학대'라는 말을 왜 기피할까

토론1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국장 김민석

I. 들어가며

1. 발제 제안에 대한 기본 의견

-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학교 현장의 절실한 요구이다.
-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여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기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학대사례 판단, 중재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제안 역시 학교 현장에 시급히 필요한 대안이므로 적극 지지한다.
- 아쉬운 점은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는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점, 법률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즉 어떤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제안되지 못한 점이다. 이번 토론을 통해 구체적 법률 개정안이 다듬어지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II.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과도한 공포

1.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에 역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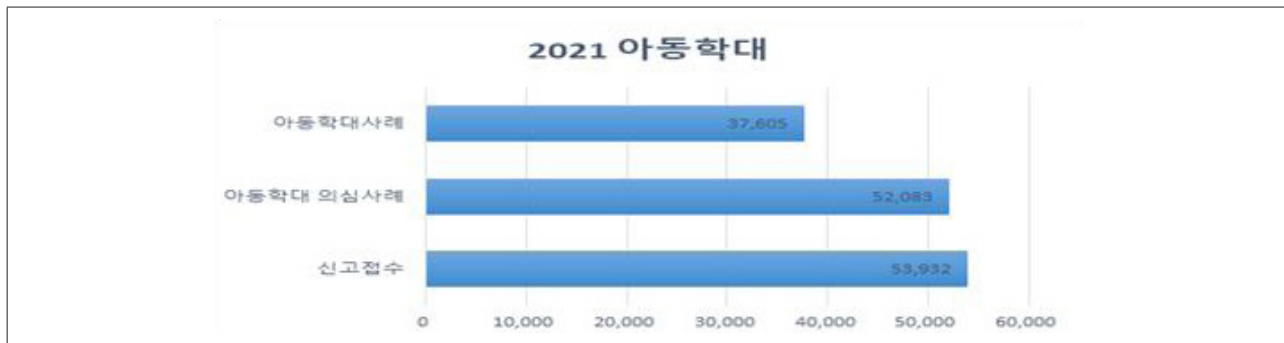
- 발제자가 설명한 전교조 설문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92.9%)이 ‘자신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다.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심정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다.
- 현장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는 의미는 수업 배제, 담임 박탈, 출근 정지, 강제 휴가, 강제 휴직, 직위해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수사기관 출석, 교육청 징계 등을 떠 올리게 한다. 신고당하기만 하면 대부분 그 험난한 긴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 무엇보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엄청난 공포감이다.

- 아동학대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은 교사로서 긍지와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더 나아가 학생 인권, 교사의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에 역행한다.

2.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과도한 공포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원인 속에 해답이 있다.

1) 2021년도 아동학대 주요 통계²⁾

① 2021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사례



-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3,932건으로 전년 대비 27.6%가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접수 53,932건의 96.6%인 52,083건을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판단했고, 현장조사를 통해 52,083건의 72.2%인 37,605건을 아동학대사례로 나머지 26.8%(13,945건)은 일반사례로 분류했다.

②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23,372 / 44.9%)				비신고의무자 (28,711 / 55.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기타	부모	아동 본인	이웃·친구	기타
7,493 (14.4%)	6,065 (11.6%)	5,785 (11.1%)	4,029 (7.8%)	10,631 (20.4%)	8,966 (17.2%)	3,660 (7.0%)	5,454 (10.5%)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서 정한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23,372건(44.9%)이다. 초·중·고 직원에 의한 신고는 전체의 11.6%이다.

③ 아동학대 발생 장소

	가정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복지시설	기타	계
건수	32,454	1,152	129	1,233	295	336	2,006	37,605
비율	86.3%	3.1%	0.3%	3.3%	0.8%	0.9%	5.3%	100

2) 2011 아동학대 주요 통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2022년 8월

-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86.3%인 32,454건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는 전체의 3.1%, 유치원에서 발생한 사례는 전체의 0.3%이다.

④ 아동학대사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5,780	12,351	655	2,793	16,026
15.4%	32.8%	1.7%	7.4%	42.6%

- 아동학대사례의 유형은 중복 유형이 42.6%이다. 단독 유형으로는 정서(32.8%), 신체(15.4%), 방임(7.4%), 성학대(1.7%) 순이다.

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현황

전체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사례 비율
37,605	5,718	15.2

- 전체 아동학대 사례 37,605건 중에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5,718건 (15.2%)이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란 피해 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명령 등이다.

○ 피해 아동 응급조치 현황

분류	건수	조치내용				
		1호	2호	3호	4호	계(중복집계)
아동보호전문기관	348(10.3%)	39	64	317	11	43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48(10.3%)	29	64	313	14	420
경찰	2673(79.3%)	1,410	1,277	2,051	197	4,084
계	3369	1,410 (28.6%)	1,277 (25.9%)	2,051 (41.6%)	197 (4.0%)	4,935 (100%)

- 1호 :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 2호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 3호 :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피해 아동 임시조치 현황 : 3,561건

- 1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729 (10.4%)
- 2호: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 2,428(34.6%)
- 3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1,444(20.6%)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1(0.7%)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 위탁 : 2,233(31.9%)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 위탁 : 120(1.7%)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4(0.1%)

⑥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경찰 수사	검찰 수사	재판 진행중	판결					파악 불가		계
			보호 처분	형사 처벌	무죄 공소기각 불처분	파악 불가	소계	수사진행 했으나 결과값 없음	수사미진행. 처벌법 조치 완료	
6,344 (39.4%)	3,223 (20.0%)	883 (5.5%)	1,874 (11.6%)	316 (2.0%)	697 (4.3)	75 (0.5)	2,962 (18.4%)	249 (2.2%)	2,335 (14.5%)	16,096 (100%)

- 2021년 아동학대사례 37,605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는 16,096건(42.8%)이다. 이중 발표일 현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316(2.0%)이다.

○ 경찰 수사 6,344건 : 수사 중 5,152, 내사종결 343, 각하 67, 파악불가 782

○ 검찰수사 3,223건 : 수사중 1,146, 불기소 908, 아동보호사건송치 944, 가정보호사송치 51, 형사기소 80, 파악불가 94

※ 보호처분 : 가정법원 단독판사,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처분을 결정

2) 교직원 100명 중 2명,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

① 2014년 이후 유·초·중·고 교직원 「아동학대행위자」

연도	신고 접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행위자			비율	
				유치원	초·중·고	계	유치원	초·중·고
2014	17,791	15,025	10,027	99	145	244	0.9	1.4
2015	19,214	16,651	11,715	203	234	437	1.7	2.0
2016	29,674	25,878	18,700	240	576	816	1.3	3.1
2017	34,169	30,923	22,367	281	1,345	1,626	1.3	6.0
2018	36,417	33,532	24,604	189	2,060	2,249	0.8	8.4
2019	41,389	38,380	30,045	155	2,154	2,309	0.5	7.2
2020	42,251	38,929	30,905	118	882	1,000	0.4	2.9
2021	53,932	52,083	37,605	140	1,089	1,229	0.4	2.9
계	274,837	251,401	185,968	1,425	8,485	9,910	0.8	4.6

〈용어 설명〉

- 신고접수(사례) :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 아동학대 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함
 - 아동학대조사 : 경찰·지자체(2020년 10월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 사례판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 일반상담(사례) :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따라 아동을 가해한 자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참고〉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비영리 민간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거쳐 「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하여 관리했다.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행으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는 2020년 10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되었다. 피해 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변경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는 아동의 복지 등을 훼손하는 복지적 차원의 광의의 개념이다. 사법기관의 형사처벌 결정에서 적용하는 아동학대 범죄 성립 여부와는 차이가 있다.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후 2021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어 「아동학대행위자」로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은 9,910명이다. 교직원으로 분류되었지만 대부분 아동을 직접 교육하는 교원으로 추정된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학교장 등은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아동복지법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0,859명이다. 9,910명은 전체의 1.98%이다. 2014년 이후 8년간 100명 중 약 2명의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 것이다.
- 8년간 100명 중 약 2명의 교직원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학대행위자로 판단되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 9,910의 교사, 어떻게 되었을까?

3) 학교장·교육청의 역할 부재

-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과도한 공포의 핵심 원인

① 최근 4년간 교직원 아동학대행위자, 기소 및 징계 현황

인원	내용		비고
6,787	아동학대행위자	▷아동학대사례로 판단 후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863	사건처리 (12.7%)	▷863명(12.7%) : 사건처리. ▷5,924(87.3%) :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었지만 수사기관에서 사건 처리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	▷수사기관
110	기소 (1.6%)	▷기소 110명(무죄선고 6, 벌금형 33, 금고 이상 18, 재판중 53) ▷불기소 : 753명(무혐의 438, 기소유예 107, 보호처분 208)	▷수사기관
339	징계 (5.0%)	▷징계위 회부	▷교육청

- 1) 6,787명 : 2018년부터 4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로부터 관련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된 유·초·중·고등 학교의 교직원 수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2021년에는 평균 50% 감소)
- 2) 863명 : 지자체가 아동학대행위자로 판단한 6,787명 중 수사기관에서 사건 처리한 인원
- 3) 110명 : 863명 중 검찰에서 기소한 인원
- 4) 339명 : 2018년(2018.1.1.~2022.8.30.) 이후 아동학대를 사유로 교육청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교원 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425명(기소유예 107, 보호처분 208, 기소 110) 중 339명을 징계위 회부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6,787명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한 후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했지만, 그중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이 기소한 인원은 110명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재판에서 6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6,787명 중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원은 339명으로 전체의 5%에 불과하다.

3. 학교장·교육청의 역할 부재가 낳은 과도한 공포

1) 형사처벌 1.6%, 행정징계 5%. 그런데도 과도한 공포의 원인은 무엇인가?

형사처벌과 행정징계의 결과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나중의 문제에 불과하다. 형사처벌, 행정징계의 결과와 관계없이 결과 전 펼쳐지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한 공포이다.

학부모는 아동학대 범죄라는 주장만으로 교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학교장에게 요구한다. 아동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명분이지만 사실상 교사의 직무 권한 박탈과 다를 바 없는 담임 교체, 수업 배제, 강제 휴가 또는 휴직을 통한 출근 정지 등의 요구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정은 학부모의 주장에 날개를 달아 주는 역할을 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받기 어려워 보이는 가벼운 사안도 강력한 주장만으로 담임 교체 등의 결과를 얻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동복지법 또는 매뉴얼 문제와 별개로 대부분 학교장과 교육청의 역할 부재에서 발생한다.

2) 아동학대의 개념은 복지 측면과 범죄 측면이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복지 측면의 아동학대 개념을 적용한다. 아동복지법의 보호범의 아동의 건강과 복지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이다.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수단을 통한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임무에 주력한다.

수사기관은 범죄 측면의 아동학대 개념을 적용한다. 범죄 측면의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상의 '아동학대범죄'를 의미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의 상해·폭행, 협박,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강간·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사기, 공갈, 재물손괴 등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수사기관은 사법적 수단을 통한 아동학대행위자 처벌로 아동을 보호한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복지적인 관점에서 아동학대 사례 여부를 판단한다.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핵심 목적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이다. 수사기관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핵심이다.

3) 학교장과 교육청(교육부 포함)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사실상 개점휴업이다.

아동학대라는 학부모의 강력한 주장 앞에 학교장의 지도력을 기대하긴 힘들다. 교육청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례 여부 판단, 수사기관의 처분만을 하염없이 기다린다. 전수조사를 진행하거나 직위해제와 같은 강력한 처분을 결정하는 때도 있다. 전수조사, 직위해제는 과거 스쿨미투 사안에 적용했던 방식이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대부분이다. 학생, 보호자, 교사의 권리와 권한이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은 학교장과 교육청의 기본 책무이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인권적 조치가 필요한 사안인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 보호가 필요한 사안인지 파악할 책무가 학교장에게 있다. 과태료가 두려워 신고는 100%, 민원이 두려워 교사에 대한 조치만 고려하는 학교장의 역할로는 교육공동체 구현은 불가능하다.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징계위원회의 결정 집행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감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이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는 교원지원법에서 부여한 교육감의 책무이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주장하는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한 후 행정 조치(주의, 경고 등) 또는 행정처분(징계, 전보 등)이 필요한 사안인지, 교사의 교육권 보호가 필요한 사안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교육감의 역할이다. 지자체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이 대신할 수 없는 권한이다.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수사기관의 범죄 여부 판단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시간, 학교 현장은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업무이므로 교육부, 교육청이 나설 수 없는 사안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낳은 어처구니없는 결과이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무관하게 교육부, 교육청, 학교장의 역할을 복원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확실한 방안은 발제자의 제안과 같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사안을 전담하는 기구와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이다.

III. 마무리하며

9,910명!

사실상 교사 100명 중 2명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난 8년간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과도한 공포감, 이유가 있었다.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과도한 공포의 주범으로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과 아동복지법이 지목된다. 과연 그런가?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전수조사, 담임 배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장에선 매뉴얼에 따른 조치로 이해하지만, 매뉴얼의 내용은 다르다. 2022년 2월 교육부가 발간한「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장은 사안에 따라 2차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및 교원업무 담당자와 협의한 후 사안의 경중과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교사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조치 가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분리의 예시로는 “동선 분리, 수업 배제, 업무 배제, (임시) 담임 교체, 연가 등의 승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담임 교체, 휴직 강제, 직위해제 등은 매뉴얼이 아닌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의 자의적인 조치였다. 교육부의 매뉴얼은 2022년 2월 처음 발간되었고 이전에는 매뉴얼조차 없었다.

아동복지법이 공포의 주범인가?

아동복지법의 문제는 심각했다. 사안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유죄 확정이면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근무할 수 없고, 민간 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현장출동, 사안 조사, 아동학대 사례 여부 판단 등의 과도한 행정 권한을 부여했었다. 현재 핵심 문제 조항은 대부분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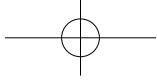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보건복지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나무랄 때 없는 내용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 발달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런데 결정적 흠결이 있다. 학교 내 사안 처리에는 실효성 없는 가정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중심의 법률과 매뉴얼이라는 점이다. 18세 미만 아동의 2/3 이상이 유치원 및 초·중등 학교 학생이라는 점에서 치명적인 결함이다.

학교 내 아동학대 시비는 대부분 교육활동 중 발생한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와 교권침해(교육활동 침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행동은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침해(교권침해)에 해당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큰 목소리로 꾸짖는 행위만으로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정서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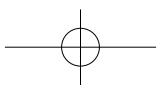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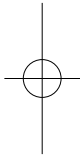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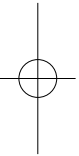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의 교육활동침해행위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 그러나 학생의 이탈행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을 담당하는 전담공무원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 개정 제안을 적극 지지한다.



토론 2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토론3

단계별 대응 정책이 모두 마련되어야 한다

장경주(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파견교사)

1. 들어가며

학교 교사들이 아동학대 무고로 신고되어 해당 교사들의 고통이 커지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자리가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5월 18-19일 광주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17개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교사들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 문제를 교육현안 토론 의제로 올려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의 토론내용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를 진척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발제문에 대한 의견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 원칙을 ‘가정’과 성격이 다른 ‘학교’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무고에 교육활동이 마비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또한 발제자가 지적해주신 대로 학부모와 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사실확인이나 사안의 경중에 대하여 학교나 교육청의 1차적인 판단 기회없이 이루어지는 직위해제, 출근정지와 같은 교사 분리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의 경우 교육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에 교원의 참여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안해주신 대로 교육청에 별도의 분쟁해결기구를 1차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부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무고’라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존 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의 제정, 새로운 절차의 마련이라는 대안 외에 교육자로서 교육의 영역에서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하는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단계별 대응 정책의 필요성

저는 ‘아동학대 무고’라는 사안이 발생하기까지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해보았습니다. 오늘 발제문을 포함하여 최근 현재 학교폭력³⁾이나 아동학대 무고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은 주로 아래 세 단계 중 3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동학대 무고를 당한 교사들의 고통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크기 때문에 3단계, 즉 사안발생 이후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가 잘 정리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관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1단계에 대한 정책 대응, 그리고 사안발생 위기가 고조되는 2단계에 필요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 발생과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시기 구분	일상적 교육활동 시기	반복적 수업방해행위에 대한 교사의 제지 시도 시기	수업방해행위 제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시기
	일상단계	사안발생 위기단계	사안발생 단계
역할 비중	교육활동 > 법과 제도	교육활동 ≒ 법과 제도	교육활동 < 법과 제도
	교사, 교육당국	교육당국, 제도화된 절차	제도화된 절차, 사법영역

1) 1단계에 대한 대안적 접근

교사와 교육당국이 교육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1단계에 필요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숙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Fairfax County Public Schools)들은 해당 교육구에서 제작한 ‘학생의 권리와 의무’라는 126쪽에 달하는 가족들을 위한 안내 책자를 학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읽으며 논의하고 내용을 숙지했다는 의미로 자필 싸인을 담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자에는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 생활규정, 위반시 처리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해당 교육구에 속하는 학교는 학기 초 첫 주에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나이에 맞게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교사와 학생들이 규칙을 검토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 임종수는 학교폭력은 학교와 관계없이 장소와도 관계없이 학생이 폭력행위의 객체가 되는 경우이므로 보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학교라는 장소의 개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학교폭력보다는 학생폭력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폭력’이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교밖에서 일어나는 폭력까지 학교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학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용어변경 주장에 동의한다. 출처 : [이슈 제언] 용어정리 필요한 학교폭력...이젠 ‘학생폭력’. 교육플러스(2023. 4. 23.)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0>

〈자료1〉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학생의 권리와 의무》 유치원-12학년 / 2022-23. 가족들을 위한 안내서(총 128쪽)

6쪽 일부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padding: 5px; 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 font-weight: bold; margin-right: 10px;"> 방법 서면 </div> <div> <h3 style="margin: 0;">학생의 권리와 의무 가족들을 위한 안내서</h3> <p>우리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의 규칙과 기대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원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i>학생의 권리와 의무, 가족들을 위한 안내서</i>’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학교에서, 교실과 온라인 환경 모두에서,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서, 그리고 학교로 등하교하는 동안 학생들 간의 교류 시에도 적용됩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나이에 알맞게 구성된 요약본을 받게 될 것이며, 교사들은 개학 후 첫 주간에 학생들과 함께 규칙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이러한 규칙과 기대 행동을 논의하도록 권장하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참조 규정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한 전체 책자를 온라인, www.fcps.edu/srr에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p>학생 징계를 다루는 규정의 전체 사본이 부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 정보에 대한 질문은 자녀의 교사나 학교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p> <p>학교에서의 여러분 자녀의 행동은 학업 성공 및 학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안내서를 읽고 자녀와 함께 논의하기 바랍니다.</p> </div> </div>
8쪽 일부	<h3 style="margin: 0;">학생의 권리</h3> <p>미국의 헌법 및 법률 그리고 버지니아주법은 학생들에게 많은 합법적인 권리와 자유를 부여합니다. 교육위원회 방침 및 규정은 학생들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많은 특권도 제공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안전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학교의 역량을 방해하지 않는 한, 학생들의 권리나 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p> <p>FCPS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생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반응적이고 배려하며 포용적인 학교 및 교실 환경에 대한 권리. ✓ 규정 2603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학생의 성 정체성, 신앙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화장실, 탈의실 시설 및 기타 편견 없는 편의 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성 정체성 및/또는 성적 성향을 공개하지 않아도 될 권리
9쪽 일부	<h3 style="margin: 0;">학생의 의무</h3> <p>FCPS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무준수와 자신의 권리표현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대합니다. 아주 어린 자녀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고 규칙을 따름으로써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p> <p>FCPS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정각에 학교에 출석하여 주어진 일정을 따라야 할 의무. ✓ 규칙, 절차, 과정을 따라야 할 의무. ✓ 유치원-12학년 교육 환경에 적합한 복장을 할 의무. ✓ 교직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할 의무. ✓ 다른 사람의 권리와 소유물을 존중해야 할 의무. ✓ 다른 사람의 신념 그리고 다른 점을 존중해야 할 의무. ✓ 외설적, 폭력적, 방해적 또는 무례한 단어, 형상, 물건을 삼가해야 할 의무. ✓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할 의무. ✓ 다른 학생을 괴롭히거나(왕따/따돌림) 다치게 하는 행동을 삼가해야 할 의무. ✓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야기되는 행동에 대해 교직원에게 알려야 할 의무. ✓ 필요할 때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지원을 요청할 의무.

우리나라 학교의 교칙엔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없이 학교교칙 위반시 처리절차 위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칙을 학기 초에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함께 검토하는 과정도 소수 혁신학교를 제외하고는 일반학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관련 당사자들에게 징계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정도입니다. 교육부가 제작하여 일선학교에 배포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경우 147쪽의 분량으로 사안발생 이후 사안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3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일상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1단계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논의하고 숙지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2단계, 3단계로 나아가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이 발생하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로운 원칙에 합의하기 어렵습니다. 존 롤스가 지적한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무지의 상태(사안 발생 이전)에서 구성원 누구에게나 치우침이 없이 정의로운 원칙을 세우고 이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권리와 책임,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논의와 동의 과정은 자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줄이고 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교사의 제지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2, 3단계로 나아가는 경우를 줄여줍니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이 보장받고 싶은 자유와 함께 살아갈 다른 구성원을 존중할 책임에 대해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의무(책임)를 동등하게 다루고 있듯이 프랑스도 교과서에서 자유의 의미에 대해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만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의 모두에게 균등한 자유보장’이라는 공화주의적 자유 가치를 함께 다룹니다.

〈자료2〉 프랑스 교과서의 ‘자유’ 서술에 나타난 두 자유관의 균형

자유주의적 자유관	공화주의적 자유관
우리는 자유롭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난다. 학교에서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유롭다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자유로운 아이들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학교에서의 규칙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학생들을 공부시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레크레이션 시간에 자유롭게 놀이를 선택합니다.	교실에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들이 따르기로 한 규칙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법은 인권 선언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각자의 자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이 법률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몇 사람이 주의를 흐트리는 행동을 하면 학급의 모든 사람이 공부를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려면 학생들이 그들을 함께 살게 해주는 규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모든 규칙들은 각자에게 배우고 공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 프랑스,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칙이나 법이 없다면 강자의 법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는 ‘안녕’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은 법에 복종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법은 인권을 존중합니다.	

*출처: 장경주(2013). 새로운 학교 문화 속에서 형성되는 학생들의 자유관 탐구. 서울대 석사논문

권리와 책임을 함께 다룬다는 것은 내가 누릴 자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릴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익숙한 자유의 의미는 ‘간섭(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회교과서에서도 자유는 주로 ‘간섭로부터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자유관에 따른 설명으로 다뤄집니다. 자유를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로 이해할 때 학생들은 교사들의 교육적 ‘개입’을 벗어날 ‘간섭’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성장, 변화를 모색하는 교육활동은 ‘개입’을 전제로 합니다. 자유를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협소한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교육을 통한 성장은 설명될 수 없으며 학생의 인권과 학생을 가르칠 교사의 권리라는 교권은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학생들의 자유와 의무(책임), 더 나아가 교사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의무(책임)를 균형적으로 다루는 교육활동은 교육활동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사에 의한 혹은 학생에 의한 자의적 폭력을 줄여줄 것입니다.

셋째, 학생들을 다차원으로 돌보기 위해 학급당 인원감축 및 교사 이외의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학급에서 끊임없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은 현재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통제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가 적어 방임으로 지적당할 사건이 적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별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실무사가 일반학급에도 배치되어 교사가 진행하는 활동수업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합니다. 수업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학생들은

교사들의 좀 더 세심한 돌봄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 이외의 지원 인력이 배치된다면 여러 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의 쉬는 시간에 교사 이외의 별도의 감독 인력을 안전을 위해 배치하여 방임 가능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외부 체험학습은 성인당 감독 학생 수를 정해 놓아 한 명이 돌보는 학생 수가 적어 문제행동을 예방합니다. 이는 1단계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도 유효한 대처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에 대한 대안적 접근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Fairfax County Public Schools)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배부하는 ‘학생의 권리와 의무’ 책자에는 2단계에서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료3〉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의 권리와 의무》 22쪽

징계 절차

학생 징계에 대한 긍정적 접근 및 **학부모**, 교사, 학교 행정인들 간의 협력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행동과 책임감 있는 시민 의식을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학교장**은 모든 형태의 비행에 대해 적합한 대응책을 결정하고, 문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도울 수 있는 필요한 중재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교사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교의 정확 없는 징계 조치

FCPS 직원들은 모든 학생이 학교 규칙과 학생들의 비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일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교사와 행정인들은 교의 정확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조치들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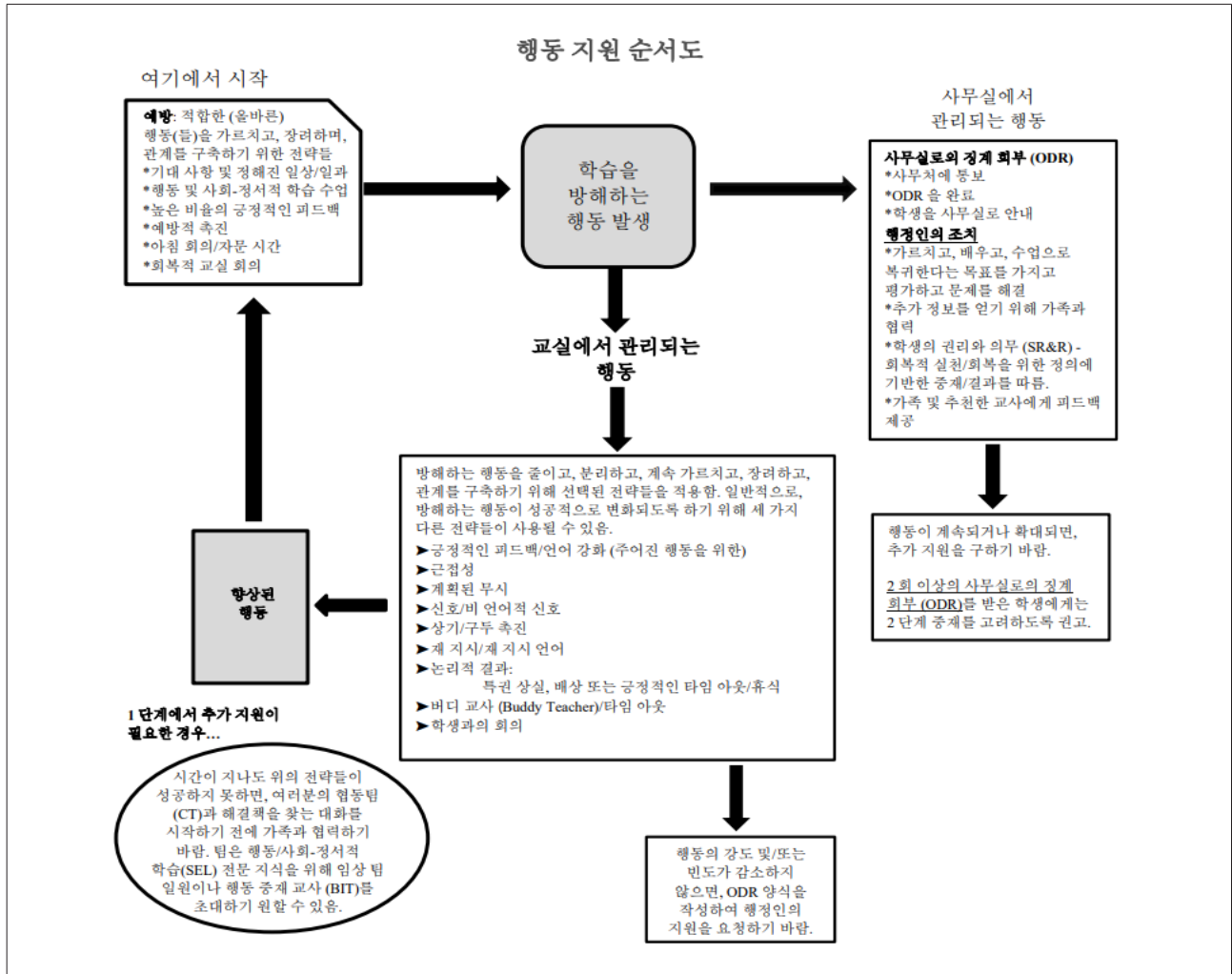
- 긍정적 행동 중재 및 지원 (PBIS) 사용
- 원하는 행동의 재교육
- 필요에 따라 학급 실행 재구성
- 행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성 및 정서적 기술을 다룸
- 교사의 개별적 훈계와 상담
- 다른 교직원과의 상담
- **학부모/교사/행정인/학생 회의**
- 자리 변경
- 회복을 위한 실천 또는 회의
- 행동에 관한 계약/도표
- 방과 후 체류
- 점심 시간의 체류
- 주차, 졸업반 학생의 특권, 팀, 클럽, 기타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의 일시적 상실
- 학급에서의 일시적 제외
- 기능적 행동 평가 (FBA)/행동 중재 계획 (BIP)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이를 교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에 교실에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1단계 즉, 일상적 교육활동 단계에 서면과 논의를 통해 숙지하고 2단계에서 교사들이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수업 방해 행위를 제지한다면 교사나 학생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아동학대’ 혹은 ‘아동학대 무고’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 아동학대 무고 모두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 제도, 법이 ‘자의적 행동’을 통제

하지 못해 나타납니다. 위에 제시한 1, 2, 3단계에 적절히 요구되는 정책 대안은 아동학대 무고만이 아닌 학교폭력,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안발생 이후 교사들이 아동학대 무고로 고통받고 다수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합리적인 방향의 법개정, 제도마련이 이어지고 위에 제시한 단계별 대응 정책도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자료4〉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의 권리와 의무》 21쪽



토론4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은 최대한 촘촘해야 한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책임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1. 급증하는 아동학대

지난 5월 7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만 2천 여 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는 2020년 1만 6천 건을 넘었고, 2021년에는 2만6천 건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가 2배 이상 급증했고, 누적 신고만 10만 건이 넘었다(10만 7,536건).

검거 건수 역시 증가했다. 2017년 3천 건 수준이던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 2천 7백 건, 2022년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출처 : 연합뉴스 TV, 2023. 5. 7. 박상률 기자)

뉴스에서는 가정 내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생후 9개월 된 아기를 이불로 덮어둔 채 그 위에 엎드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사건까지 끔찍한 아동학대 사례를 언급하며 학대예방경찰관을 늘리고 관련 예산도 증액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면서 경찰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아동학대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반론

지난 3월 방영된 PD 수첩 ‘나는 어떻게 아동학대 교사가 되었나’ 편이 쏘아 올린 ‘학교 내 아동학대’는 교사에게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에게도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시각이 달랐다.

방송을 본 후 학부모들은 “그건 아동학대지”라고 얘기했고 특히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 레드카드는 학생과 학부모가 보기엔 정서적 학대가 맞다는 의견이었다. 만약 성인 대상 강의에서 강사가 ‘강의 중 휴대전화를 본’ 수강생의 이름을 ‘예쁜’ 꽃무늬 레드카드 옆에 붙여 놓고 강의를 한다면 이름이 적힌 당사자는 기분이 어떨까. 강의실을 나가지 않고 참고 듣는다 해도 강의 시간 내내 칠판에 붙은 이름표만 보일 것이다. 해당 학생은 초2였다.

그런데 마침 방송이 나간 후, 레드카드 당사자인 학부모가 우리 단체에 상담을 접수했다.

학부모 측 의견을 전달한 변호사 인터뷰를 통편집한 편파 방송이었다면서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왔다. 2021년 3월에 발생한 이 사안은 그해 12월에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상벌점제와 이로 인한 벌 청소, 뒷짐 지고 까치발 이동은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심의한 후, 교사에게는 특별인권교육 이수, 교장에게는 학교 교직원 대상 특별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사안이다. 또한, 방송에 나온 것과 달리 칠판에는 호랑이스티커가 아닌 레드카드만 붙어 있고 그 옆에는 매일 학생들의 이름이 부착되었다고 한다. 레드카드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에 벌 청소를 시켰고, 급식실까지 까치발로 이동한 것은 한두 번의 안전 훈련이 아닌 3월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생활지도였다는 여러 학부모들의 증언도 보내왔다.

게다가 학교 측은 같은 해인 2021년 7월에 학부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해 ‘교권침해’로 조치를 내렸는데, 2023년 2월, 고등법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교권침해 사안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그리고, 해당 학교는 그 전년도인 2020년 11월에 이미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학생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규정이 상당한 학교’로 지목되어 학칙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해당 학부모에 따르면 상벌점제인 레드카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해당 교사 대신 배정된 기간제 교사도 시행했다고 한다. 학교가 전북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 학교 문화를 개선했으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3.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다.

이 규정에서 잘못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등이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공무원인 교사와 국가기관인 학교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국가, 지자체, 학교 어디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아동에게 신체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성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보다 어떤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주고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목적도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에 두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②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 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는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포함돼 있다.

제10조 ③항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항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동법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조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4.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학교 밖 시각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3월 29일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신상 공개’ 국민청원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 요건을 채웠다. 지난 2월 7일 인천 논현동에서 발생한 시우 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친모와 삼촌이 올린 청원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 가정 내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기관 내 아동학대도 예외일 수 없다. 2015년 어린이집과 보육 시설의 아동학대 사례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유치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2021년에 발의되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경남신문 2023. 2. 8. 한유진 기자)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39%로, 이 중 국공립 유치원의 설치율은 4.98%(4896개 중 244개)에 불과했다. 반면 사립 유치원은 87.91%(3433개 중 3018개)의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어린이집의 경우 CCTV가 의무 설치돼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안에 함께하고 있는 유치원 아이들도 안전할 권리로부터 차별받으면 안 된다”며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한 현실 속에서 CCTV는 교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관계자는 “CCTV가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분명 양면이 있다고 본다”며 “국공립유치원 모든 교실에 CCTV가 있고, 그것이 녹화되고 또 학부모가 요구하면 공개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면 교사의 자율권, 수업 지도권이 훼손될 수 있고, CCTV 정보들로 인해서 문제 제기하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타 유아들의 정보까지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져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만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들은 이 법의 제정 취지가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이라며, 학교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성인의 아동학대 방지와 처벌에 있는 것이지, 가정과 학교를 양분할 성격이 전혀 아니다. 법을 개정하려면 전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마땅하다.

5.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발제에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으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은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전담기구를 두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앞에서 사례를 들었던 교육청의 미미한 권한, 학교장의 교육청 조치 불이행,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동의하기 어렵다'. 발제 역시 아동학대 관련 법을 교육 기관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관점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일부 교원단체 주장처럼 보호자가 자녀에게 들은 얘기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이 들어 신고하는 것을 '무고'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현행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론은, 가정이든 기관이든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촘촘한 안전 그물을 설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학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오류가 있다면 기존의 시도 전담기구에 교육계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배치하도록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교육청에 별도로 전담기구를 둔다는 것이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여전히 현실은 교육청에 신고하면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이냐고 묻고 다음 날 담임이나 교장에게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사의 꾸중으로 자살한 학생 등 학생의 아동학대 피해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아동학대 사안이 유아·초등·특수에서 많이 발생한다지만 18세 미만까지가 대상이니 중·고생도 사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2021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대 자살률(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은 2020년 6.5명에서 2021년 7.1명으로 10.1%나 증가했고, '2022 청소년 통계'에서는 중·고생 10명 중 3명이 최근 1년 간 우울감을 경험했고, 중·고등학생 중 약 40%는 평상시에도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든 성인이든, 학생이든 교사든, 인간은 누구나 똑같이 존엄하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하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하자는 법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데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이 법을 확대하기는커녕 더 축소하자고 제안하기 전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더 촘촘하게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원단체가 앞장서서 힘든 아이들을 위해 학교 안에 상담전문가와 전용 공간을 마련하든지, CCTV가 아니라 1교실 2교사제를 의무화하는 식의 지원 체계를 요구하면 좋겠다.

한 아이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 한 아이가 내 아이라면 어땠을까...

토론5

교사들은 '아동학대'라는 말을 왜 기피할까?

이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이나 절차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전제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 이외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대응하는 활동 과정에서도 비슷한 부분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인천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물리적, 언어적 폭력)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인천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매뉴얼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아직까지 학교 상황에 적합한 아동학대 대응 절차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교사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라는 말이 너무 무겁고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정을 중심으로만 주로 이야기되던 '아동학대'라는 말이 학교로 확장된 것이 어색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전에도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하던 폭력을 단지 자녀 '훈육'이나 보호자의 특별한 '양육 방식' 정도로 여기던 것이, 아동학대라는 새로운 언어가 생기면서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로 부각되었다. 학교 공간의 경우에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는 인식을 더 확산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아동학대라는 표현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학교나 교육청의 역량과 역할이 더 필요하다.

또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없거나 드문데 허위로, 혹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예민해서 이뤄지는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는 식의 접근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적지 않고, 오히려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교사들이 “이건 아동학대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발하는 여러 사건들에는 명백한 체벌(머리 때리기, 귀 잡아당기기), 모욕적 행동, 폭언 등이 많다. 체벌과 아동학대의 구분은 불가능한데도, 가해자의 의중에 따라 학대인지 아닌지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교사들이 '지도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혹은 '편하게 하려면 방치하지 제지하지 않는다'며 적극적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아동학대 취급하는 것에 불쾌해하거나 억울해 한다. 하지만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그것이 학생을 설득하거나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가진 권한과 권력을 이용해 밀어붙이는 행동이라면 이는 '아동학대' 혹은 '인권침해'가 맞다. 학생을 불쾌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교사니까' 학생에게 고함을 쳐도 되고, 학생이 '감히' 교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긴다면, 교사가 학생에게 한 말을 학생이 그대로 교사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불쾌하다면, 이는 이미 교사 본인이 당연히 위에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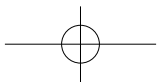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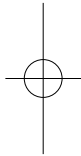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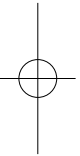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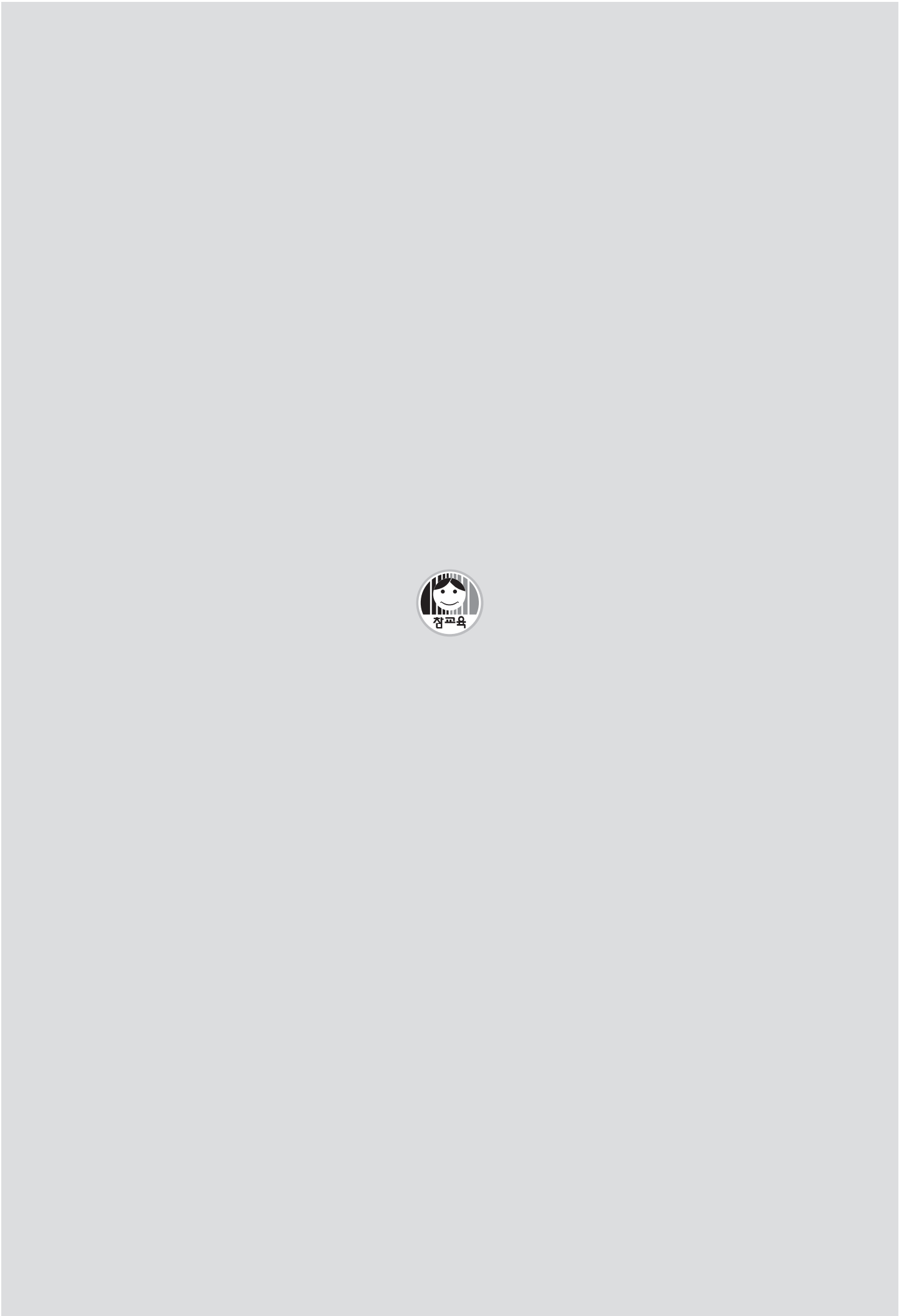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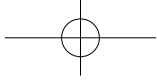
서 학생에게 가하는 모든 행위는 학대가 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은 하면 안 되는 아동학대인지 매뉴얼을 찾기 전에, 학생과 교사는 학교에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같은 공간에서 평화롭고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청소년, 학생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감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렇기에 경미한 체벌을 과하게 아동학대로 문제 삼는다는 식의 접근은 삼가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과도기로 보며, 교사들이 방어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나눠야 한다. 아동학대가 가해자 개인의 악행만이 아니라 학교/정부 등이 아동학대와 인권 침해를 방관/권장하던 여러 관행이나 문화에 대해 반성과 자성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형성하는 것에 동참하여야 한다.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 환경, 경쟁교육 등 시스템 속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지적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단지 ‘아동 학대 범죄’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봐야 한다.

다른 한편, 왜 학생들이 아동학대 신고라는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보아야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사에게 불만이 있을 때, 교사의 행동이 부당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해결할 길이 마땅하지 않다. 현재 학교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은 동등한 주체가 전혀 아니고, 징계 권한, 성적 처리 등 교사가 가진 권력으로 인해 학생과 교사 간의 마찰이 있을 경우, 학생은 본인이 직접 자신을 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제한된다. 이의를 제기하거나, 교사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즉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오해를 풀고 소통해서 권리를 구제받는 해결 방식은 매우 요원하다. 만약 작은 갈등 상황에서 교사에게 의문을 제기하면 더 즉각 더 큰 징계, 더 큰 사건으로 발전하기 십상이다. 때문에 작은 문제부터 본인이 직접 대화하지 않고 ‘신고’라는 방식을 통해 제3자에게 해결을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것만이 아닌, 더 폭넓은 인권침해 등 문제들을 구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단순히 아동학대전담기구가 교사의 오해를 풀어주는 기구가 되는 것에 반대한다. 오히려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기구로서 작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라는 말을 기피하지만,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아동학대’라는 말을 공유하게 되면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더 민감해져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현실의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라는 말이 확산된 만큼 인권침해 구제 절차 마련, 학생인권의 범위 명시, 학생인권침해 행위 금지 명시 등의 가이드라인을 통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참고 자료

신수경 변호사

“아동학대 관련 법의 변화가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

(오늘의 교육 72호, 2023)

‘가정 내’ 아동학대의 대응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

아동학대 관련 법의 변화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재고(再考)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은 현행 법률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 두 법률의 제·개정의 계기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이었다. 가정 내 친부와 계모에 의하여 극심한 학대를 당하다가 아동이 굶어서 사망한 사건⁴⁾,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른 사건⁵⁾ 등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커졌고, 더 이상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처럼 아동학대 관련 법의 변화의 유인은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개입의 필요성이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아동 보호 시설에 대한 규율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다. 이후 동법은 1981년에 보호 대상 아동의 범위를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등 전부 개정되어 현행법과 유사한 체계를 마련하였고 법률명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정의는 2000년 전부 개정을 통해 들어오게 되었는데, 단순히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던 이전의 「아동복지법」과 달리, 2000년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유형으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및 방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201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피해 아동에 대한 긴급한 조치와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준용하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한하여 ‘아동학대 범죄’로 보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친권 등을 제한하는 조치, 교육 및 상담을

4) 1998년, 친부와 계모가 남매를 지속적으로 굶기고 폭행하여 여자 아동이 사망하자 그 시체를 집앞 마당에 유기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아동복지법」은 2000년 전부 개정되었다.

5) 2013년 울산에서 계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당시 만 8세였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살인죄를 인정하여 징역 18년형이 선고되었으나, 같은 시기 경북 칠곡에서 계모와 친부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9세의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해 치사로만 기소되어 계모에게 징역 15년, 친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반도록 하는 조치 등을 동법의 특별한 절차(임시 조치, 아동 보호 처분, 피해 아동 보호 명령)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관련 법의 제·개정 뿐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의 방향 역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잡고, 2019년에는 아동학대에 관해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⁶⁾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는 아동학대 신고 시, 경찰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아동학대 사실을 조사하여 “원가정회복”을 위한 개입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 연계하여 교육,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의 강화는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⁷⁾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바람직하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이 양육되고 있던 원래의 가정에 필요한 지원과 개입을 함으로써 해당 가정이 아동이 건강히 양육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의 방향도 일견 타당하다. 문제는 ‘학교’와 같이,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의 제·개정을 가져온 유인과 원가정 회복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결이 다른 ‘가정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

2011년부터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에 대한 징계의 권한을 교장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의 지도(징계)의 방식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여, 사실상 ‘학교 내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2006년 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이 정서적 학대 행위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학생에 대한 사생활 침해 금지,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⁸⁾하였으나

6) 관계 부처 합동(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비전,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7)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8) 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74042).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하여 각 교육청 단위의 '학생인권조례'에 같은 취지의 내용들이 담겨 논의되고 있다.

한편,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으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절차와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 보호자의 개념인 '아동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 '업무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 하는 자'의 범위에 '교사'가 포함된다고 해석됨에 따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일련의 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신고'를 받은 수사 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교사)를 현장에서 격리시켜야 하고(응급 조치), 상당 기간 피해 아동에 접근을 금지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임시 조치).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의 취지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므로, 교사에 의한 '가정 외,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는 "형사법상 특례"로서 국가가 개입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경우에서도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있어서는 "원가정 회복"을 위한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일선의 업무 매뉴얼은 예외 없이 "가정 내" 아동학대와 같은 수준으로 개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의심'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신고 의무 조항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 상황과 아동의 위험이 외부에서 목격되기 매우 어려운 은폐성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마련된 특별한 규정이다. 그러나 학교 내의 아동학대는 비교적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확인 등을 거쳐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통해 수사 기관이 개입하도록 하고 있는 다른 법률⁹⁾과 같은 수준으로 규율함이 상당함에도, '의심' 시 신고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집단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피해 아동을 확인하고 다른 아동들의 목격 진술 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전수 조사'는, 아동들에 대한 후견권 등을 가지고 아동을 양육하는 사실상 가정과 유사한 양육 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조사 주체인 시·군·구의 시설 관리 감독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하라는 취지로 마련된 절차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는 이러한 시·군·구의 관리 감독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교육청 산하 학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측의 비협조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반대로 학부모들의 조사 동의를 얻지 못하여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피해

9)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신고 의무는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발생한다.

아동들의 진술이 외부의 영향으로 이미 오염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반면 전수 조사를 하기 위하여 투여되는 행정력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아동들의 2차 피해 양상은 상당하다. 이처럼 학교 내 아동학대에 있어 ‘전수 조사’는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도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학대 행위 의심자인 “교사”를 피해 학생으로부터 분리시키도록 하는 조치도, 다른 학생들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에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가정 내’ 아동학대 특성으로 인하여 마련된 일련의 절차들이 ‘학교 내’ 아동학대에서도 필수적으로 진행되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학교 내’ 정서적 학대 발생의 양상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가정 내’의 아동학대와 동등한 수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는 별개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의 독특한 양상은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의 권리’와 ‘학생인권’의 논의와도 연결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학교 내에서 “신체적 고통”을 수반한 체벌 등의 신체적 학대는 크게 감소했으나, 정서적 학대로 인한 피해의 신고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의식 향상 등의 이유도 들수 있지만, 아동 권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감수성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학교와 교사 사회의 인식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한다.

피고인은 학원 영어 강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2세)의 지저분한 책상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돼지라는 동물 알아, 돼지는 어떻게 생활하니, 너랑 돼지의 차이점은 돼지는 혼자 씻지 못하는데 너는 씻을 수 있고, 같은 점은 돼지와 너는 생각이 없다는 점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때렸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112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해자(7세)가 수업 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을 향해 사과하도록 시켰으나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자 ‘제대로 사과 안 할

거면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라는 취지로 팔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가방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를 향해 던졌다.

-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3508

피고인은 C 초등학교 영어 전담 교사이다. 피해자에게 철로 된 필통을 사용하여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니 엄마도 너 이려고 다니는 거 아냐?”라고 말하고, 동급생의 떨어진 연필을 주워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쫓아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1244

이상의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생활 적응과 지도의 명목으로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지적과 꾸짖음이 피해 아동에게는 모욕, 명예 훼손과 같은 상황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아동의 정신 건강 발달에 저해를 줄 정도의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회적인 행위만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처벌에 이를 정도의 정서적 학대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훈육과는 구별되고,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행위”여야 하므로, 법원은 “①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②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③ 피해 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 및 건강 상태, ④ 행위에 대한 피해 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 아동의 상태 변화, ⑤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⑥ 행위의 정도와 태양, ⑦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⑧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⑨ 행위가 피해 아동 정신 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정서적 학대로서 처벌에 이르는 실제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준은 다소 모호한 면이 있으므로,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체계에서는 교사를 아동학대 행위자로 하여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상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의 양상 중 특징적인 유형은, 교사가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아동으로 낙인찍게 만드는 방식의 따돌림, 편애, 차별 등이다. 실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담임 교체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유형이 이것이다. 과거 한 학급의 학생 수가 50~60명에 이르던 시기에 담임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모범적인 학생들을 대외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한편으로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그릇된 점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해 다른 학생들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방식은 흔히 통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지도 방식은 더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의 담임 교사는 해당 학급학생들의 의사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실상의 권력자다. 그러한 권력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교사의 지적을 계기로 학생들 사이의 따돌림이 이루어져서 학교 폭력 사안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학교 내’ 아동학대에 대한 별도의 절차 마련

이처럼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는, 애초 정부가 의도한 ‘강력한 대응’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가정 내’ 아동학대와 결을 달리한다.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 법이 마련한 절차가 이용될 필요성도 적고, 실제로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로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신고’될 우려 등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 의심’을 핑계 삼아 교사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상 ‘가정 내’ 아동학대와 ‘가정 외’ 아동학대를 구분하여 대응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의 ‘가정’은 아동이 실제로 양육되고 있는 곳으로 당연히 아동 복지 시설과 같은 양육 시설은 포함하여야 한다. 실제 현재 매뉴얼상의 ‘전수 조사’ 방식은 양육 시설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이루어질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정 내/외로 아동학대를 구분한 후, 가정 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원가정 회복을 도모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자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가정 외 아동학대, 가령 학교에서의 경우, 교육청에 별도의 분쟁 해결 기구를 1차적으로 거치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현재 실무에서도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여는 경우도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는 ‘교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교육청 산하 절차에서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여 중재와 개입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학부모 등의 무리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하여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사 스스로도 아동의 권리와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학대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들을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명심보감 필사 사건’을 소개한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준비물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학교 교칙에 따라, 점심시간에 놀지 못하고 교실에 앉아서 명심보감의 내용을 필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 기관은 아동학대 범죄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시교육청은 아동의 휴식권 등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행위라 하여 학생인권 침해로 판단하였다.¹⁰⁾

해당 사례는 교사의 아동에 대한 행위가 단순히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의도로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는 차원을 넘어, 그 행위로 인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10) “광주시민단체 “초1에 명심보감 필사… 남구청, 아동학대 여부 재판단해야”, <뉴스1>, 2022년 4월 18일.

